

장기복무군인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신청서

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
신청인	성명			
	생년월일	복무기간		
	전화번호			
	무주택기간 년	부양가족 명	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년	군인 근속기간 년
	장기복무군인 청약자격 확인서 발급 현황 : 1건 1차 : 경기도 화성시, 000 APT 청약자격 확인서 발급('20.10.29일) 2차 : 3차 : 4차 :			
공급 희망주택	주택 명(단지명)	공급 규모		
	공급 위치	투기과열지구 여부 []에 [] 아니오		

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는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되더라도 이를 감수할 것을 각서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「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」 제18조에 따라 장기복무군인 청약자격 확인서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에게 최대 5회 발급 (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, 청약 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포함)되며,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발급될 수 없습니다.
- 장기복무군인 청약자격 확인서는 주택별(청약별)로 주택 공급규모의 최대 3% 이내에서 발급되며 발급 가능한 수량보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 「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」 별표 4에 따른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발급합니다.

작성방법

-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재하지 마십시오.
-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.